

회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앞 쪽)

진단정보	상병명		상병코드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신청구분	[]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구입비 [] 인공호흡기 대여료 []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특수조제분유 [] 저단백즉석밥 [] 옥수수전분					
등록 대상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대상자 (환자)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 본인 [] 가족 및 친족 [] 보건소 공무원 [] 기타 (환자와의 관계:) ※ 기타 :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전화번호		
환자가구	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거여부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가구	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환수조치 시 안내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확인(√ 체크) []

유의사항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확인(√ 체크) []

지원개시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이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확인(√ 체크)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환수조치 시 안내, 유의사항, 지원개시일에 대하여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신청합니다.

이
한
문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보건소장 귀하

환자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2.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4. 입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6.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7.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2. 입대차계약서 3.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1.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보건소 담당자 확인 서류	1.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 3.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 4.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5.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는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기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임목 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원) □ 기타(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마리, 원) □ 돼지(마리, 원) □ 기타가축(마리, 원) □ 종묘(원) □ 기계·기계류(원) □ 기타(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A-(B+C+D))		원					
		(A)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 외 기관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³⁾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할보조금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1) 환자가구는 가구원 전체 성명, 부양의무자가구는 가구원 중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이 동의서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합니다.
- 동의자(의료비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금융정보등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 계약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희귀질환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